【2017년 10월 12일 평의원회 첨부 자료】

I. 우리 학회의 학회 사무소 규정

■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본 학회의 명칭은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for Parasitology and Tropical Medicine 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Ⅱ. 기생충학 교실(과)가 있는 서울소재 대학 및 학회 평의원 수

서울의대(4) 연세의대(4) 건국의대(2) 가톨릭의대(1) 경희의대(1) 고대의대(1) 이화의대(1) 중앙의대(1) 한양의대(1). *학회 평의원 수 및 가나다 순

Ⅲ.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중 기초의학 기간학회의 회칙 혹은 정관내 사무소에 관한 규정 (총칙 부문)

학회명	사무소 소재 규정	기타
생화학분자생 물학회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번지에 둔다.	법인학회
대한미생물학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에 둔다.	법인학회
대한생리학회	제2조 (장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대한약리학회	제 4 조 (소재) 본 회의 본부 (사무실)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대한병리학회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지회 설치 및 운영은 지회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대한해부학회	총칙에 사무소 규정이 없음	
대한법의학회	제 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곳에 둔다.	
대한예방의학	제4조 (사무소) 이 회의 본부는 이사장의 소속기관이 있는 지역에 두며, 필	
회	요한 경우 지회를 둘 수 있다.	
대한기생충학	제2조 (소재지)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	
열대의학회	부를 둘 수 있다.	

즉 우리학회를 제외한 비법인 학회 6개 학회중 3개학회는 사무소를 특정 위치에 지정하지 않았음.

[참고 자료]

■ 대한생리학회-회칙

제1장 명칭 및 소재지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생리학회"라 칭한다.

제2조 (장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대한약리학회-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약리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약리학에 관한 연구와 지식의 향상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학술대회 및 각 종 세미나 개최

2.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

3.학술의 국제교류

4.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조 (소재) 본 회의 본부 (사무실)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의 학술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 및 인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와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발전적으로 통합한 학회로서, 사단법인 생화학분자생물학회(Korean Society for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라 칭한다. 이하본회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번지에 둔다.

■ 대한미생물학회 -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체와 동물의 병원성미생물학 연구 그리고 병원성미생물학의 기초와 응용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진흥과 인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미생물학회(The Korean Society for Microbiology)"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에 둔다.

■ 대한병리학회-회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병리학회(이하 본회라 약함, 영문명 The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지식교환을 도모하고, 병리학의 연구와 보급을 촉진시키며, 이 분야를 전공하는 이들의 학문적 및 사회적 품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지회 설치 및 운영은 지회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 대한해부학회 - 회칙

=> 사무실 규정이 없음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대한해부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본회는 해부학연구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술대회 개최
- 2. 학술지 발간
- 3. 기금모금
- 4. 용어심의
- 5. 해외교류
- 6. 기사자격심의
- 7. 교재편찬
- 8.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업
- 제 4조 (기부금 모금) 1. 본회의 발전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의한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된다.
- 2. 본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 3. 홈페이지 또는 본회의 정기 총회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4. 본 회 이사장 또는 회장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 1항에 따른 선거 운동을 하지 않는다.

■ 대한법의학회 - 회칙

제 1 장 총 칙

- 제 1조【명칭】 본 회는 대한법의학회(THE KOREAN SOCIETY FOR LEGAL MEDICINE)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지식 교환을 도모하며 법의학 연구와 보급을 촉진시키며,
- 이 분야를 전공하는 이들의 학문적 또는 사회적 품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곳에 둔다.

■ 대한예방의학회-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대한예방의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KSPM)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회는 예방의학의 학문발전, 국민보건향상,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학술대회, 집담회 및 학술강연회 등 개최
- 2.학술지 및 도서발간
- 3.예방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계획 및 연구
- 4.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계획 및 연구
- 5.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 6.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학술적 교류에 관한 사항
- 7.예방의학 전문의 연수교육 및 예방보건사업의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 8.임상예방의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 및 예방의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 9.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사무소) 이 회의 본부는 이사장의 소속기관이 있는 지역에 두며, 필요한 경우 지회를 둘 수 있다.